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40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 의 자 : 정춘생・강경숙・김선민
백선희・서왕진・이해민
전진숙・최민희・최혁진
허성무・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성별임금공시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제3항 각 호의 사항”으로, “관련 기관”을 “관련 기관·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관”을 “기관·법인”으로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은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채용 인원 수
2. 근로자 및 임원 수
3.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4. 근로자 평균임금

5. 이직자 수

6.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수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

9.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 ② (생 략)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적극적 조치 및 성별임금 공시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은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채용 인원 수 2. 근로자 및 임원 수 3.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4. 근로자 평균임금 5. 이직자 수 6.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

	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수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 9.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관련 기관·법인----------.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관·법인----------.